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68 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권칠승·이기헌·박홍배

조 국・김준혁・추미애

김준형 • 민병덕 • 홍기원
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, 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의 인권향상, 성평등 실현,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기본정신 중 '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의 인권향상'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.

또한 기본원칙 중 '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'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'기본적 인권', '인간의 존엄과 가치' 및 '성평 등'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, 인권을 근간으로 개 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,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'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'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,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 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 항 및 제4조제1항제1호). 법률 제 호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"청소년"을 "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제1호 중 "원칙"을 "원칙,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 ① 국제	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 ①
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	
감소, 여성·아동·장애인· <u>청</u>	<u>청</u>
<u>소년</u> 의 인권향상, 성평등 실현,	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
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	
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	
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	
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	
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본원칙) ① 국가, 지방자	제4조(기본원칙) ①
치단체, 그 밖의 시행기관(이하	
"국가등"이라 한다)은 국제개발	
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	
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	
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	
추진하여야 한다.	
1.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<u>원칙</u>	1 <u>원칙</u> ,
존중	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 정
	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
	<u>약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